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지난 9월 김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학교 교육은 물론 학교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학교도서관협회의,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협회의, 대학문헌정보학교육협회의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서관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도

서관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되 융통성 있는 인력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등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법안은 2004년 원안보다도 못한 악법”이라며, “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 단체, 사서교사 관련 단체, 교원단체,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관련단체와 NGO를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지적한 문제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교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행정 사무만을 강조하여 학교 도서관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학교도서관의 발전보다는 비정규 행정직 사서만을 양성한다는 점, 각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 현행 <도서관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 학교도서관 정상화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타령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김경숙 씨는 “학교도서관은 학습 공간을 뛰어 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해관계에 따른 인력문제만을 부각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도서관협회 측은 “2004년보다 한 발 후퇴하고, 도서관 입장에서 두 발 후퇴한 법”이라면서 “충분한 검토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 올랐다. 몇 년 동안 논의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법사위에 올려 당황스러웠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의 핵심은 결국 ‘학교도서관에서 누가 일할 것냐’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시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사서교사가 강제규정이었는데 이번 수정안은 일반사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학교도서관에는 행정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강점이 필요하다. 자기주도형 학습은 학교도서관이 도와줘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주요 고객은 교사들과 학생들이다. 특히 교사들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려면 교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어야 한다.”

송곡여고 이덕주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은 행정관리가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만남과 지적공유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시설’로 보고 있다. 그래서 관리자(운영자)가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 같다”며 “학교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사서교사의 배치문제’이다. 이덕주 교사는 “2007년 4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직 사서교사는 약 560명이다. 국내에 약 10,000개의 학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약 200명이었고, 이후 매년 100명 이상씩 늘려왔다. 사서교사가 도서관을 담당해야 교육적 측면에서나 학교도서관 운영면에서 일관성이 있다”며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교사제도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재운 의원의실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에 이번 법안과 관련해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무조항은 살리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무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바뀌었다”며, “11월에 법사위가 열리면 김재운 의원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